

# 이사회 규정

주식회사 코리아써킷

# 이사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2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6조(이사회)

-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.

### 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,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보고사항 및 부의안건을 포함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 
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신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0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 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 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   - (4) 정관의 변경

- (5) 주식의 소각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 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·감사의 보수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(19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 등의 결정
- (2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21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상담역, 고문 등의 선임 및 해임
- (3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4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- (5) 공동대표의 결정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,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9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(10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
#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대외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(건당 30억원 이상)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(건당 30억원 이상)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### 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타회사 임원의 겸임

### 5. 기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, 조정의 결정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1억원을 초과하는 출연 결정
- 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2. 연간 사업 보고, 반기 보고서, 분기 보고서, 월 경영 실적 보고서 등
3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4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
5.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(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일시)
6. ESG(지속가능경영)와 관련된 사항
7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 **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**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(감사의 출석)**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 **제13조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**제14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**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 **제15조(의사록)**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 
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**제16조(부속실)**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